

부천시 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 사용의 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상정
- 제145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7.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

가.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1호, 2007. 4.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579호, 2008. 1.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제2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 제31조 및 제32조

-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공공목적 사용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사용의 경비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258호
의결 년월일	2008. 7. 18 (제145회)

제출년월일 : 2008.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1호, 2007. 4. 11. 공포·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579호, 2008. 1. 3.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농어촌정비법」 제20조 → 제2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 → 제31조 및 제32조
- 나.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공공목적 사용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경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의경비징수조례”를 “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2조에 따라”로 하고, “농업등”을 “농업 등”으로 하며,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을 “사용하는 경우의”로 하고, “목적외 사용경비”를 “목적 외 사용경비”로 하며, “범위에 관한”을 “범위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목적외 사용”을 “목적 외 사용”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경비”를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로 하고,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를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목적외 사용경비”를 “목적 외 사용경

비”로 하고, “목적외 사용승인시”를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

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면제대상 확인서	
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	
위 치	
사용 기관명	
사용면적 또는 수량	
사 용 목 적	
<p>위의 농업기반시설은 목적외사용경비 면제사유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행 정 기 관 명(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천시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 사용의경비징수조례</p>	<p>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이하 "목적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u>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u></p> <p>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u>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이라도 공공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u></p> <p>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u></p>	<p>제1조(목적) -----<u>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2조에 따라-----농업 등-----사용하는 경우의-----목적 외 사용경비-----범위에 관하여-----.</u></p> <p>제2조(적용범위) -----<u>목적 외 사용-----.</u></p> <p>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u>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p> <p>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p> <p>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p> <p>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p>	

현행	개정안
<p>제4조(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u>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u></p> <p>② <u>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4조(징수) ① 제3조에 따른 목적외 사용경비----- -----<u>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u>----- -----.</p> <p>② <u>목적 외 사용경비</u>----- -----<u>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u>----- -----<u>다만,</u>----- ----- -----.</p>
<p>제5조(사용기간) <u>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의 경우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5조(사용기간) -----<u>3년</u> <u>이내</u>-----<u>다만,</u> ----- -----.</p>
<p>제6조(사용료 면제) <u>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범위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p> <p>① <u>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p>	<p>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p>

<관계법령발췌서>

○ 농어촌정비법

제22조(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한국농촌공사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려면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목적 외 사용의 사유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 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제32조에 따른 경비부과 예정액 및 산출 근거
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 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 나. 영농, 그 밖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제32조(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경비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의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경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수와 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경비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영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